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행정지원과)

의안번호	제 63 호
제 출 자	성북구청장 (2022. 11. 14.)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 진 만

1. 제안이유

대통령령인「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지급 대상, 지급 금액 등을 규정에 맞게 수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나.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 신설

다.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을 통한 여비지급 기준 현행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2022. 9. 29.~2022. 10. 19.), 별도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여비 조례에도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것으로,

○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 제3, 7, 8호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제3호 행정안전부장관 → 인사혁신처장
- 제7호 행정안전부장관 → 인사혁신처장
- 제8호 일반직계약직공무원 →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 →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개정

▪ **안 제2조 제2항 : 상시출장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 정비**

- 지급대상 : 불법행위 담당업무, 위생업소 지도 점검 등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상시적으로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내근직원 제외)
- 지급금액 : 업무 특성,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출되는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안 제2조 제2항에 별표2을 신설하여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구에서는 별도로 지정한 상시 출장 공무원은 없음.

▪ **안 제4조 : 대통령인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준용을 통한 여비지급 기준 현행화**

- 안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별표 1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1]를 준용하여 여비지급 기준을 현행화 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여비 조례에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1)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국내여비 지급표**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